

## 카자흐스탄의 2009년도 세제와 광물채굴세

이 재 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New Tax System and Mineral Extraction Tax 2009, Kazakhstan

Jae-Ho Le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305-350, Korea

#### 1. 서 론

새로운 세제가 광업 분야에 미칠 실제 효과는 포괄적 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의 일률적 감소에 따른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광물채굴세를 징수하려는 의도로 인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상품가격이 생산 한계비용 가까이 하락한 현재 자원분야로 세금부담을 전가하려던 초기 목적은 추진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다. 정부가 낮은 수익성을 갖는 광상에 대해 광물채굴세의 면제를 고려하고 있는 바, 가까운 장래에 대규모 광업회사들에 대해서도 광물채굴세를 낮추리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2. 2009년 1월 이후의 카자흐스탄 과세

##### 2.1. 보너스(Bonuses)

보너스지급시스템은 비록 새로운 세율이 도입된 2009년 세제 변동에도 영향 받지 않을 것이며, 보너스는 2 종류로 분류 된다:

**서명보너스(Signature bonus)**: 지하자원 이용권에 대한 일괄 지급

광물자원의 매장량 및 광상의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정부가 정한다. 서명 보너스는 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탐사계약에 대한 최소 보너스는 미화 27,000불로 확정될 것이며, 매장량 가치를 근거로 산출되는 생산계약에 대한 보너스는 최소 미화 29,000불로 확정될 것이다.

##### 상업적 발견보너스(Commercial discovery bonus):

계약 지역에서 상업성 있는 광상이 발견되었을 때 지하자원 이용자가 지불하는 고정지불금

상업적 발견보너스의 세율은 현재 국제 가격 기준으로 확정 가채 자원량 가치의 0.1%이다. 지불금은 광상으로 부터 가채 광물량을 승인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 2.2. 취득원가(역사적 원가) 상황

비록 탐사에 참여했지만, 생산 계약 체결에 실패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행된 탐사비용에 대한 상환 고정지불금은 변화가 없으며, 지급액 규모는 전문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 2.3. 법인세(Corporation Tax)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포괄적 소득세는 2009년에는 30%에서 20% 그리고 2010년에 17.5%로 하락하다 2011년에 15%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월결손금에 대한 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는데, 헤지(hedge)와 스왑(swap)을 포함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규칙도 도입될 것이며, 과소자본세제규칙은 관련 기업들 및 조세피난처 거주자들에게 적용된다.

포괄적 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하자원 이용자가 수익을 계산할 때 공제를 목적으로 광물채굴세를 경비로 산정하면, 포괄적 소득세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비율로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Corresponding author: jhlee@kigam.re.kr

#### 2.4. 광물채굴세(Mineral Extraction Tax)

로알티를 대신할 광물채굴세는 인허단계에서 부과되고 영업비로 보고된다.

광물채굴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광물을 포함하는 원재료는 4개의 주요 군으로 분류된다(Table 1);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광물군,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광물과 기타 광물군,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광물군, 회수불능 및 부외 자원량으로부터 추출된 광물군. 가장 단순한 예는 채굴된 광물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될 경우로, 광물채굴세는 런던금속거래소 거래 가격의 퍼센티지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다. 광물군에 따른 광물채굴세 표준 산정은 제3의 당사자들에게 판매될 경우,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될 경우, 보고기간동안 판매되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판매 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광종별 세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Table 2). 이들 세율은 추출된 광물 가치와 관련된 과세 기준에 적용될 것이다. 광물채굴세 산정 방식을 상기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단순 추출보다는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로알티 체계에서는 수익의 2-4%를 지불하였던 광업 회사들은 새로운 광물채굴세로 인해 조세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광업회사의 이익추정 및 평가는 광물채굴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수익이 낮은 광상에 대해서는 광물채굴세가 감면될 것임이 예견된 바 있다.

카자흐스탄의 재무장관인 Bolat Zhamishev는 2009년 1월 29일에 광업회사 및 금속회사들이 고용을 감축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의 광물채굴세 세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 Zhamishev 재무장관에 따르면, 광업 분야에 대한 광물채굴세 인하는 조세 수익이 약 250억 텡게(카자흐스탄 화폐단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이 낮은 지하자원 이용자에게는 고용수준 유지 의무 조건으로 더 낮은 광물채굴세 세율(이전에 적용된 로알티보다 더 낮은 세율)을 부과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경제예산기획부 조세정책국 국장인 Vera Knyukh는 1월 30일에 광물채굴세 세율을 인하하는 새로운 정부 규정이 2월 중순경에 승인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었다. 또한, 2월 2일에 Karim Massimov 국무총리는 정부는 가까운 시일안에 광물채굴세를 인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 법규가 2월 중순 경에

Table 1. Application of the MET in the mining sector

Group of raw materials	MET base if sold to the third parties	MET base is sold/ used internally	MET base if not sold during reporting period	MET base if not sold under the contract
Contains LME traded minerals only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Contains both LME traded minerals and other minerals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 Weighted average realized price x Volume of non-LME mineral extracted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 1.2 x factual extraction (mining and initial processing) cost under IFRS x volume of non-LME mineral extracted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 Weighted average realized price x Volume of non-LME mineral extracted	Mean average daily LME price x Total volume of LME mineral extracted + 1.2 x factual extraction (mining and initial processing) cost under IFRS x volume of non-LME mineral extracted
Contains minerals traded at LME	Weighted average realized price x Volume of extracted mineral	Weighted average realized price x Volume of extracted mineral	Weighted average realized price x Volume of extracted mineral	1.2 x factual extraction cost (mining and initial processing) x volume of extracted mineral
Contains minerals extracted from written-off and off-balance resources	0% MET rate applied	0% MET rate applied	0% MET rate applied	0% MET rate applied

**Table 2.** Mineral Extraction Tax(MET) rates on minerals

# Groups	Mineral (taxable product)	MET rate in % 2009F	MET rate in % 2010F	MET rate in % 2011F
1 Ore of ferrous, non-ferrous and radioactive metals	Chrome ore (concentrate)	16.2	16.8	17.0
	Manganese-iron manganese ore (concentrate)	2.5	2.8	3.0
	Iron ore (concentrate, pellets)	2.8	3.2	3.5
	Uranium (productive solution)	22.0	23.0	24.0
2 Metals	Copper	5.7	7.0	8.0
	Zinc	7.0	8.0	9.0
	Lead	8.0	8.25	8.5
	Gold, silver, platinum, palladium	5.0	5.5	6.0
	Aluminum	0.25	0.28	0.30
	Tin, nickel	6.0	6.0	6.0
3 Raw materials containing metals	Vanadium	4.0	4.0	4.0
	Chrome, titanium, magnesium, cobalt, tungsten, bismuth, antimony, mercury, arsenic and others	6.0	6.0	6.0
4 Raw materials containing rare metals	Niobium, lanthanum, cerium, zirconium	7.7	7.7	7.7
	Gallium	1.0	1.0	1.0
5 Raw materials containing disseminated metal	Selenium, tellurium, molybdenum	7.0	7.0	7.0
	Scandium, germanium, rubidium, cesium, cadmium, indium, thallium, hafnium, rhenium, osmium	6.0	6.0	6.0
6 Raw materials containing radioactive metals	Radium, thorium	5.0	5.0	5.0
7 Raw materials containing non-metals	Coal	0.0	0.0	0.0
	Phosphorite	4.0	4.0	4.0
	Boric anhydride	3.5	3.5	3.5
	Barite	4.5	4.5	4.5
	Talc	2.0	2.0	2.0
	Fluorite	3.0	3.0	3.0
	Shungite	2.0	2.0	2.0
	Graphite and others	3.5	3.5	3.5

공포될 수 있고, 그리고 인하의 주요 조건은 고용수준 유지임을 강조한 바 있었다.

언급된 광물채굴세 인하는 광업회사의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5. 초과이익세(Excess Profit Tax)**

광업분야에서 포괄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충분히 개정되어져 온 초과이익세의 변화이다.

초과이익세의 산정은 먼저 소득대 승인된 지출의 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을 세율과 비교하는 것이다 (Table 3). 대응 비율은 초과이익세가 징수 될지 아닌지를 결정하며, 만약 징수한다면 최대 한계 세율로 결정한다. 소득이 지출의 1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초과이익세를 책정하지 않는다. 만약 소득이 지출의 170%를 초과한다면, 초과이익세는 최대 한계 세율 60%까지 전액 납입되어져야 한다. 초과이익세 산정을

**Table 3.** Excess Profit Tax rates - 2009F assumption (%)

Ratio of EPT base income to allowed expenses	Excess Profit rate (%)
<1.25	0
1.25<1.30	10
1.30<1.40	20
1.40<1.50	30
1.50<1.60	40
1.60<1.70	50
>1.70	60

목적으로 광물채굴세를 지출로 계산한다.

역사적으로, 초과이익세는 상업적인 내용을 가진 계약서(commercial contract)의 서명 연도에 따라 여러 다른 유형이 존재했었다. 2004년 1월에 앞서 적용된 조부계약서에서는 전통적인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계산방식으로 세금을 산정하였고, 2005년도

1월 이래로는 누적 소득대 지출 비율로 산정하였다. 비록 새로운 2009년도 개정판이 높은 영업비용의 기업들에게는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2004년도 이전의 초과 이윤세가 2004년도 이후 개정본보다 기업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세법개정에 따라, 초과이윤세는 운영비와 물가 변동에 민감하게 연동될 것이다.

## 2.6. 기타 세금

### 재산세(Property tax) :

현재의 조세는 자동차 및 토지를 제외한 연간 상가 자산의 평균 잔여 장부 가액에 부과하는 형태이다. 새로운 조세법에서의 재산세는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동산에만 적용될 것이다. 새 세법에 따라 광업회사에게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세율은 2008년도 13%, 2007년도 14%였으나, 2009년에는 12%로 낮아졌다. 지질 및 지구물리 관련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지되는데, 이는 탐사 및 시추 장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초과 부가가치세는 환급될 것으로 기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감사 완료와 같은 협약이행문제에 순응해야 한다.

### 국제세무(International Taxation) - 양도소득(Capital Gains) :

지하자원 이용자들의 주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 절차는 원천징수세로 변경되었다. 이는 구매자가 원천징수의 책임이 있을 때, 비거주 매입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동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금은 지하자원 이용자로부터 징수될 것이다. 양도소득이 판매자의 정보로 결정되어 질 때, 매입자에게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주식비용을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은 전체 판매가로 적용될 것이다.

## 2.7. 조세행정

납세자 관리에 관한 여러 기준은 세법에서 새롭게 개정되어져 왔다; 단지 실주소지에서의 납세자 등록; 새로운 형태의 조세관리 - 주소지에서의 납세자 확인 및 조세 등록에 관한 조세조사; 조세감사 기간 연장(60-180일); 그리고 곧 있을 조세감사에 관한 최고(notification).

### 국제세무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일컫는데, 2008년 7월에 도입되었던 이전가격법이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새로운 법이 도입한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또는 자회사(마찬가지로 내국기업의 국외지점 또는 자회사)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과 지점 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소득금액 계산상의 기본원리이다. 이는 이해당사자간 및 독립 거래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며, 독립 당사자간 거래에 대한 10% 면제요건(Safe Harbor Rule)을 폐지하였다. 더불어, 신법은 내수 판매 후 수출되는 지하자원 이용자의 생산품에 대한 자국의 관리 기준을 재고한다. 게다가, 신법은 이전가격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문서화요구(documentation requirements)를 발표하는 동시에 이전가격결정방법 목록을 늘렸다. 목록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가격법, 이익분할법, 그리고 거래순이익율법이 있다. 신 규정은 또한 조세 당국과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를 확정짓기 위한 절차를 제공한다.

## 3. 다른 국가와의 과세 비교

2008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가장 쉽고 가장 투명한 조세제도 중의 하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조세부담은 이전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낮은데, 카자흐스탄의 총 조세부담율은 45%로, 러시아의 54.2%보다 낮다. 기타 다른 자원부국과의 세율 비교는 Table 4와 같다.

카자흐스탄은 더 낮은 조세 부담과 더불어 신흥 시

Table 4. Tax rates(%) in the resource-rich countries

Region/ Country	Total Tax Rate	Corporate income tax	Labor tax	Other taxes
CIS				
Kazakhstan	45.0	21.2	21.1	2.7
Kyrgyastan	67.4	3.6	27.2	36.5
Russia	54.2	12.7	35.9	5.5
Ukraine	60.3	13.5	45.4	1.4
Uzbekistan	122.3	1.3	35.9	85.0
Africa				
South Africa	38.4	25.0	2.3	11.0
Asis and Oceania				
China	77.1	17.7	51.0	8.3
India	81.1	14.3	19.4	47.4
Latin America				
Brazil	71.7	22.4	42.1	7.2
Chile	26.3	18.4	3.9	4.0
Mexico	37.1	5.3	30.2	1.6

**Table 5.** Time(hours per year) to comply with taxes in other countries

Region/ Country	Total	Corporate income tax	Labor tax	Consumption tax
<b>CIS</b>				
Kazakhstan	<b>156</b>	60	64	32
Kyrgyastan	<b>204</b>	60	72	72
Russia	<b>256</b>	64	96	96
Ukraine	<b>2,185</b>	425	800	960
Uzbekistan	<b>152</b>	32	48	72
<b>Africa</b>				
South Africa	<b>350</b>	150	150	50
<b>Asis and Oceania</b>				
China	<b>872</b>	200	288	384
India	<b>264</b>	40	96	128
<b>Latin America</b>				
Brazil	<b>2,600</b>	736	491	1,374
Chile	<b>432</b>	48	192	192
Mexico	<b>552</b>	264	96	192

장 국가들 중에서도 절차가 덜 복잡한 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중 이루어진 조세 납부 건수를 근거로,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연합내 다른 국가들보다 상위 등급에 위치한다. 또한, 과세에 순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근거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절차가 덜 번잡하다. 평균적으로, 카자흐스탄은 세 가지의 주요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혹은 판매세, 근로세)에 순응하는데 156시간이 걸리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256시간이 필요하다 (Table 5).

**4. 결 언**

납세자들이 당국에 내야하는 면허서류들이 대폭 줄고 상품등록 및 통관 절차도 크게 간소화시킨 카자흐스탄의 세제개혁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이 관세를

포함한 세제 부문에서 그간 겪어온 불편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지 활동 기업들의 수익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대두되고 있으니 이 지역에서 자원 탐사와 개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록 세제가 개선되더라도, 카자흐스탄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들에게는 원자재 등을 수입과정에서 관세당국에 뇌물을 줘야 며칠이라도 빨리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등 각종 부패행위가 만연해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부문의 뇌물수수 등 부패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불편이 가시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출연연구사업인 ‘해외광물자원 확보 기반구축 및 부존평가’과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문헌**

Draft Law On the Subsurface and Subsurface Us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7).  
 Deloitte (2009) Tax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6p.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09) The Natural Resources and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Central Asia, 258p.  
 The World Bank (2008) Paying Taxes 2008, 27p.  
 Visor Capital (2009) ENRC and Kazakhmys keeping their chins up, 72p.